

연결(모·자)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1. 연결법인 기본사항

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③ 대표자 성명	④ 연결사업연도 ~				
⑤ 전화번호	⑥ 전자우편주소				
⑦ 소재지					
⑧ 업태	⑨ 종목	⑩ 주업종코드			
⑪ 모법인명	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				
⑬ 법인구분 1. 내국 2.외투(비율 %)	⑭ 조정구분 []외부 []자기	⑮ 외부감사대상여부 []여 []부			
⑯ 법인종류별	영리법인	비영리법인			
	상장법인	코스닥상장법인	기타법인		
	중소기업	11	21	30	60
	중견기업	71	72	73	74
	상호출자제한기업	81	82	83	84
	그외 기업	91	92	93	94
⑰ 신고구분	[]정기신고, []수정신고(가. 서면분석, 나. 기타), []기한후 신고, []경정청구				
⑱ 주식변동	[]여,[]부	⑲ 장부전산화	[]여,[]부		
⑳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	[]여,[]부	㉑ 국제회계기준(K-IFRS) 도입	[]여,[]부		
㉒ 사업연도의제	[]여,[]부	㉓ 결산확정일	.		
㉔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		㉕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			

2.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

구 분		법인지방소득세			계
		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
연 결 후	㉖ 수입금액	()			
	㉗ 결산상당기순이익				
	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				
	㉙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				
	㉚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			
	㉛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				
	㉜ 외국법인세액 조정액				
	㉝ 외국법인세액				
	㉞ 과세표준 개별귀속액				
	㉟ 연결법인의 산출세액				
	㊱ 총부담세액				
	㊲ 기납부세액				
㊳ 차감납부할세액					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7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. 그 밖에 필요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① 법인명란, ② 사업자등록번호, ③ 대표자 성명, ⑤ 전화번호, ⑥ 전자우편주소 및 ⑦ 소재지는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④ 연결사업연도란: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3. ⑧ 업태, ⑨ 종목, ⑩ 주업종코드란: 주된 업태·종목·주업종코드[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(별지 제17호 서식)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·종목을 말합니다]를 적습니다.
4. ⑪ 모법인명 및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: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5. ⑬ 법인구분, ⑭ 조정구분, ⑮ 외부감사대상여부, ⑯ 신고구분, ⑰ 주식변동, ⑱ 장부전산화, ⑳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, ㉑ 국제회계기준(K-IFRS) 도입, ㉒ 사업연도의제란: 각각 해당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6. ⑬ 법인종류별란: '중소기업'과 '중견기업'은 "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연결집단용)" 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6호의18서식) 상 적합 기업, '상호출자제한기업'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, 각각 해당하는 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 - "중소기업"은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"○"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7. ㉓ 결산확정일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6호의22서식 ㉓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.
8. ㉔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: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4호의5서식 「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(변경신청)서」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(단위: 원,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).
9. ㉕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: 과세표준계산방법이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(원화 재무제표 기준)일 경우 "1"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(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)일 경우 "2"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(자산,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)일 경우 "3"을 적습니다.
10. ㉖ 수입금액 ~ ㉙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.
11. ㉚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"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5서식)"의 ㉚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2. ㉛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"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5서식)"의 ㉛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㉜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㉝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3. ㉜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: "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5서식)"의 ㉜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4. ㉝ 외국법인세액란: "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5서식)"의 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5. ㉞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: ㉛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㉜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㉝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16. ㉟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"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5서식)"의 ㉟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㊱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㊲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7. ㊳ 총부담세액란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"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5서식)"의 ㊳란 및 ㊴란을 더한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㊵란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㊶란 및 ㊷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8. ㊸ 기납부세액란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"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5서식)"의 ㊸란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㊹란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㊺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9. ㊻ 차감납부할세액란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"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5서식)"의 ㊻란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㊼란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㊽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